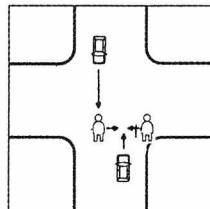


차량과 사람 사이의 사고 과실상계

■ 교차로 또는 그 지근의 횡단

(1) 간선도로, 대로의 횡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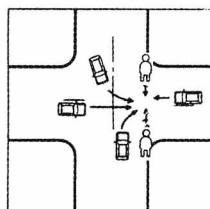
기본과실 : 20%



(2) 간선도로에서의 소로횡

단 (인도에서 인도 횡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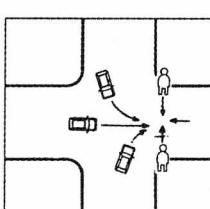
기본과실 : 5%



(3) 간선도로에서 소로횡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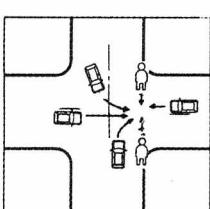
(대로에 인도가 없는 경우)

기본과실 : 10%



(4) 우선관계 없는 교차로

기본과실 : 15%



(수정요소)

① 야간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추가

② 직전, 직후 횡단, 후퇴의 경우 피해자 과실 10% 추가

③ 아동, 노인인 경우 피해자 과실 5% 감소

④ 집단횡단시 피해자 과실 5% 감소

⑤ 보·차도 구별이 없는 경우 피해자 과실 5% 감소

⑥ 차의 현저한 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10% 감소

⑦ 차의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20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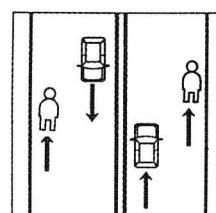
■ 도로 횡단이 아닌 보행자 사고의 경우

(1) 도로의 좌측단을 보행하는 경우

기본과실 : 0%

※ 좌측보행이 원칙으로 보행자가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다면 5% 과실 추가

(2) 보·차도 구별이 있는 도로의 경우 과실 10% 추가



좌측보행

기본과실 : 0%

우측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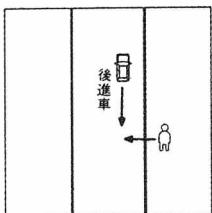
기본과실 : 5%

- ※ 도로 중앙부분으로 갈수록 과실 10~20% 추가
- ※ 야간인 경우 과실 5% 추가
- ※ 도로 중앙부분 보행하는 경우 피해자 과실 30~40% 추가

■ 후진차량에 의한 사고

(1) 보행자가 차량직후 횡단

기본과실 : 2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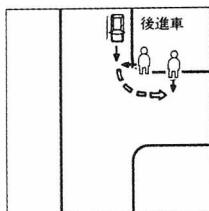
◀ 보행자가 전혀 주의를
기울이지 않고 후진차
의 직후를 횡단한 경우

(수정요소)

- ① 야간인 경우 과실 5% 추가
- ② 보·차도 구별이 있는 차도상에서는 과실 5% 추가
- ③ 차에서 경적이나 신호를 한 경우 과실 10% 추가
- ④ 유아·노인인 경우 과실 10% 감소
- ⑤ 차의 중현저한 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10% 감소
- ⑥ 차의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20% 감소

(2) 직후 횡단이외의 경우

기본과실 : 5%



◀ 보행자가 전혀 주의를
기울이지 않고 후진차
의 직후를 횡단한 경우

(수정요소)

- ① 보·차도 구별이 있는 차도상에서는 과실

10% 추가

- ② 차에서 경적이나 신호를 한 경우 과실 10% 추가
 - ③ 주택가·상점가인 경우 과실 5% 감소
 - ④ 후진 개시전 후방에 있었던 경우 과실 10% 감소
 - ⑤ 차의 중현저한 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10% 감소
 - ⑥ 차의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 과실 20% 감소
- ※ 주⑤ : 후진하는데 적절한 속도가 아닌 경우에는 속도위반이 아니더라도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.

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유형

(1) 아파트, 공항 내 횡단보도 사고

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아파트나 공항내의 횡단보도가 사설차선일 때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(횡단보도사고)를 적용하지 않는다.

(2) 보행자가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다 적색으로 신호가 바뀐 경우

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 녹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이러한 경우 차량이 녹색진행 신호를 보고 출발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받게 된다.

※ (주) 보행인이 녹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 도중 녹색신호가 점멸하였다가 다시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라고 봄.(서울형사지법 87노 471)